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0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소양,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
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
홍성룡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에 위원회 성별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성평등위원회,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,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-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자치구 각 위원회의 성별구성기준(특정성별60% 이하) 미준수사유를 심의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8호)
- 나.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3항, 안 제50조제3항)

다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8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

제7조제3항 중 “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
2.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50조제3항 중 “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
2.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원격회의) 제6조에 따른 위원회,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및 제49조에 따른 격차개선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제7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경제·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·노동</p>	<p>제6조(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</u></p> <p>2. <u>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0조(격차개선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</u></p> <p>2. <u>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8조의2(원격회의) 제6조에 따른 위원회,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및 제49조에 따른 격차개선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</u></p>